

2022. 7. 29. 개정

타행 자동이체 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타행 자동이체에 의하여 각종 자금을 정기적으로 이체하고자 하는 자(이하 “거래처”라 한다)와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신청, 변경 및 해지)

- ① 거래처가 타행 자동이체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행 자동이체(신규, 변경, 해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자금융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타행 자동이체를 변경,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금일 전 제1영업일까지 제1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③ 마지막 이체일로부터 1년 이상 이체처리되지 않을 경우 및 수취인 거래 금융기관(이하 “입금은행”이라 한다)의 지정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다) 부재, 해약 등의 사유로 입금되지 않는 경우 은행은 타행 자동이체를 임의로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는 경우 해지사실을 거래처에게 통지합니다.

제3조(타행 자동이체 방법)

은행은 거래처의 타행 자동이체 신청에 따라 지정일에 통장, 수표, 지급청구서 제출 등 별도 청구 없이 출금계좌에서 이체금액을 인출하여 입금계좌로 입금합니다.

제4조(입금가능 예금종목)

입금계좌는 당좌, 가계당좌, 보통, 저축, 기업자유예금과 입금은행이 지정하는 적금 및 신탁계정이어야 하며, 이 외의 계좌로 이체를 원할 경우 거래처는 입금가능한 계좌와 연계하여 이체할 수 있도록 입금은행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5조(출금)

은행은 거래처 출금계좌에서 지정일(거래처가 지정한 날이 없는 월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 거래처가 지정한 날이 휴일 등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지정한 날의 전영업일 또는 익영업일 중 거래처가 선택한 날)에 출금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출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6조(거래불능 및 면책)

출금계좌의 인출가능 예금잔액이 이체금액과 이체수수료를 합산한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미결제타점권(자기앞수표 포함)은 인출가능금액에서 제외) 및 기타 거래처의 귀책사유(수취계좌 부재, 잔액증명서 발급, 입금한도 초과, 법적 지급제한, 해약 등)로 출금 또는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체 처리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거래처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제7조(출금우선순위)

이 약관에 따른 자동이체에 의한 출금과 그 외의 자동이체(카드대금결제, 어음수표대금결제, 타 자동이체 등, 이하 “기타 자동이체”라 한다)에 의한 출금이 같은 날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의해 출금이 이루어집니다.

- ① 기타 자동이체에 따른 출금 상호간 : 은행에서 정한 자동계좌이체 약관의 요구불간자동이체 순위에 의해 출금
- ② 이 약관에 따른 자동이체에 의한 출금과 기타 자동이체에 의한 출금 상호간 : 이 약관에 따른 자동이체에 의한 출금시도 시 이체처리가 가능한 경우, 기타 자동이체에 의한 출금보다 우선하여 실행

제8조(출금기준)

이 약관에 따른 자동이체에 의한 출금은 은행의 최종 이체시도 시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최종 이체시도 후 입금분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9조(이용수수료)

이용수수료는 건당 (300)원으로 하며, 이체금액 출금 시 포함하여 출금합니다.

제10조 (계좌이동서비스)

- ① 타행 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 계좌이동서비스 이용 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은행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에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조회 및 해지, 출금계좌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③ 거래처는 은행 지점,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④ 거래처가 은행 지점,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당행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타은행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해지 후, 당행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 됩니다.

제11조(약관의 변경)

-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 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 일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거래처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은행은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거래처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거래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12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관련예금 및 신탁약관을 준용합니다.

※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부칙<제정>

이 약관은 2017년 4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부칙<1>

이 약관은 2022년 7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